

『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5월 15일

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면과 동에 걸쳐게 됨에 따라,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산업단지 확장단지조성사업
- 옥계동 14필지 47,483.6㎡ → 산동면 신당리에 편입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

가. 산동면 리간 경계 조정에 따른 「구미시 리의 명칭 및 구역에
관한 조례」 일부개정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은

-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면과 동에 걸쳐게 됨에 따라,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